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540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건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7125 | 서법수의원 등 12인 | '25.1.2. | 상정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5.2.18.)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12.9.)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9867 | 윤재옥의원 등 10인 | '25.4.17.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12.9.)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9925 | 윤재옥의원 등 10인 | '25.4.18.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12.9.)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10733 | 서법수의원 등 12인 | '25.6.12. | 상정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5.8.21.) |
| | | | | 소위 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5.12.9.) |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군·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

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을 “제34조의2제2항의”로 하고, 제6조제9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을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압류등록)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를 “등록번호표가”로,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을 “등록번호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착 및 봉인”을 “부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을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가”를 “지정검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 지정”을 “지정검사기관장”으로, “검사대행자로”를 “지정검사기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기관이”를 “검사총괄기관이”로, “총괄기관 지정”을 “검사총괄기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검사대행자는”을 “지정검사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총괄기관”을 “검사총괄기관”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

수 ·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29조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통계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승인 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 또는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한다.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고·검사 등)”을 “(보고·검사·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검사하게”를 “검사·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조사”로,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을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

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자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질문”을 “검사·조사·질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원의 출입”을 “사고조사기관의 조사·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부착·봉인”을 “부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5.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 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

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 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u>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폐기한</u>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 ----- ----- -----. ----- <u>제34조의2 제2항의</u> ----- -----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 ⑨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u>건설기계등록증</u> ,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⑨ ----- ----- ----- <u>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u> -----. |
| ⑩ · ⑪ (생 략) <u><신 설></u> | ⑩ · ⑪ (현행과 같음) <u>제6조의2(압류등록) 시·도지사는</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

| | |
|---|--|
| <p>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u>부착 및 봉인</u>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p> <p>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u>등록번호표</u>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u>부착 및 봉인</u>을 신청하여야 한다.</p> | <p><u>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u></p> <p><u>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u></p> <p><u>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u></p> <p><u>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u></p> <p>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 ----- ----- -----부착----- -----. ② -----등록번호표가----- ----- -----부착----- -----.</p> |
|---|--|

| | |
|---|--|
| <p>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u>부착 및 봉인</u>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③ ----- -----<u>부착</u>----- ----- ---. ----- ----- ----- -----. -----.</p> |
| <p>④ (생략)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u>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④ (현행과 같음)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 ----- ----- -----<u>등록번호</u> <u>표를</u>----- ----- -----. ----- ----- ----- -----.</p> |
| <p>1. · 2. (생략)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u>부착 및 봉인</u>을 신청하는 경우</p> | <p>1. · 2. (현행과 같음) 3. ----- -----<u>부착</u>----- -----</p> |
| <p>제14조(검사대행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u></p> | <p>제14조(검사대행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u></p> |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③ 검사대행자-----

-----.

1. ~ 6. (현행과 같음)

④ -----지정검사기관이-----

| | |
|---|--|
| <p>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 <p>----- ----- ----- ----- ----- -----.</p> |
| <p>1. ~ 2. (생 략)</p> | <p>1. ~ 2. (현행과 같음)</p> |
| <p>3. <u>검사대행자</u>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 <p>3. <u>지정검사기관</u>----- ----- -----</p> |
| <p>3의2. ~ 5. (생 략)</p> | <p>3의2. ~ 5. (현행과 같음)</p> |
|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u>검사대행자 지정</u>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u>검사대행자로</u>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p> | <p>⑤ ----- -----<u>지정검사기관 지정</u>----- ----- -----<u>지정검사기관으로</u>----- -----.</p> |
| <p>⑥ (생 략)</p> | <p>⑥ (현행과 같음)</p> |
|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 <p>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
| | <p>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p> |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3) ----- 검사총괄기관 -----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

장 · 군수 · 구청장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p>③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u>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 <p>③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 ----- ----- ----- ----- ----- ----- -----.</p> |
| <p>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p> | <p>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p> |
|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p> | <p>④ ----- ----- ----- ----- -----시 장·군수·구청장----- -----.</p> |
| <p>⑤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⑤ <u>시장·군수·구청장-----</u> ----- ----- ----- -----.</p> |
| <p>⑥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u>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p> | <p>⑥ <u>시장·군수·구청장-----</u> ----- ----- ----- -----</p> |

| | |
|---|--|
| <p>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 <p>----- ----- ----- -----.</p> |
| <p>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생략)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 <p>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시장·군수·구청장</u>-----.</p> |
| <p>1. ~ 2. (생략) ③ ~ ④ (생략)</p> | <p>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
| <p>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u>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p> | <p>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 -----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p> |
| <p>② ~ ⑤ (생략)</p> |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p>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p> | <p>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p> |

| | |
|--|---|
| <p>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u> <u>을 투여한 상태</u> 또는 과로 ·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 설기계를 조종한 경우</p> <p><u><신 설></u></p> <p><u>8. · 9. (생 략)</u></p> <p>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 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u>시장 · 군수</u> <u>또는 구청장이</u> 실시하는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제30조(수시적 성검사) ① 건설기 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 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시장 · 군수</u> <u>또는 구청장이</u> 실시하는 수시</p> |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u>술에 취한 상태</u>-----</p> <p>-----</p> <p>-----</p> <p>-----</p> <p>-----</p> <p><u>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u> <u>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u> <u>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u></p> <p><u>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u> <u>와 같음)</u></p> <p>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 성검사) -----</p> <p>-----</p> <p>----- <u>시장 · 군수 · 구</u> <u>청장</u>-----</p> <p>-----.</p> <p>제30조(수시적 성검사) ① -----</p> <p>-----</p> <p>-----</p> <p>----- <u>시장 · 군수 ·</u> <u>구청장</u>-----</p> |
|--|---|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2(설립 등) ① 건설기계

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의3(사업) 건설기계안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신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

<신설>

연구 및 기술 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

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운영, 통계 작성 · 관리에 관한 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 · 승인 받은 업무

10.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1조의4(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1조의3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 운영 수익금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공

<신 설>

| | |
|---------------------------|--|
| <p><u><신 설></u></p> | <p><u>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출연금·보조금·융자금 또는 기부금</u> <u>4. 그 밖의 수입금</u> <u>제31조의5(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u> <u>제31조의6(사용료 등의 징수) 건설기계안전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u> <u>제31조의7(자료 제공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u></p> |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 | |
|--|---|
| | <p><u>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
| <p><u><신 설></u></p> | <p><u>제31조의9(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盜用)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 | <p><u>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p> |
| | <p><u>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
| <p>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u>시 ·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u></p> | <p>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u>시장 · 군수 · 구청장은-----</u> ----- -----</p> |

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③ 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검사 · 조사하게-----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8. 검사총괄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 ·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안전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검사 · 조사-----

--사고조사기관의 직원 -----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또는 시정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조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사고조사기관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
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
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
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
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구청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
| <p>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p> | <p>----- ----- ----- -----. -----.</p> |
| <p>② · ③ (생 략)</p> |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u>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 <p>제36조(청문) ----- ----- <u>시장 · 군수 · 구청장</u> ----- ----- -----. -----.</p> |
| <p>1. (생 략) 2. 제14조제4항에 따른 <u>검사대행자</u>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 4. (생 략)</p> | <p>1. (현행과 같음) 2. ----- <u>지정검사기관</u> ----- ----- -----.</p> |
| <p>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u>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u>,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 <p>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 ----- ----- <u>시장 · 군수 · 구청장</u>----- ----- -----. -----.</p> |
| <p>② (생 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p> | <p><삭 제></p> |

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
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

비 범위: 2016년 1월 1일

제40조(별 칙) <신 설>

제40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 설>

| | |
|--|---|
| | <p>에 처한다.</p> <p>1. <u>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u></p> <p>2. <u>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u></p> <p>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제41조(벌칙) ----- ----- ----- -----.</p> <p>1. ~ 16.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18. · 19. (현행과 같음)</p> <p>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p> |
|--|---|

| | |
|---|--|
|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p> <p>1의2. ~ 2. (생략)</p> <p>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u>검사·질문</u>을 거부·방해·기피한 자</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u>직원의 출입</u>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u><신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표를 <u>부착·봉인</u>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p> <p>2의2. ~ 8. (생략)</p> <p>③ (생략)</p> | <p>----- ----- -----.</p> <p>1. ----- -----<u>아니한</u>----- -----</p> <p>1의2. ~ 2. (현행과 같음) 3. ----- -----<u>검사·조사·질문</u>----- -----</p> <p>4. ----- -----<u>사고조사기관의 조사</u> • <u>점검</u>-----</p> <p>5. <u>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u> ② ----- ----- -----.</p> <p>1. (현행과 같음) 2. ----- -----<u>부착</u>----- ----- --</p> <p>2의2.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
|---|--|

| | |
|--|--|
|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u>시장·군수</u>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 <p>④ ----- ----- ----- -----<u>시장·군수·구청장</u>-----.</p> |
|--|--|